

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6. 03. 20.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0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(2026. 04. 03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도로시설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 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기준을 “5천원 미만” 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“1만원 미만” 으로 상향 조정
-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2조 4항, 5항, 7항, 제3조 3항, 제9조 1항)

3. 제안근거

- 「도로법」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,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점용료 부과 기준이 「도로법 시행령」과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
 - ▶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제외되는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“5천원 미만”에서 “1만원 미만”으로 상향 조정함.

- 종합검토 결과,
상위법령에 맞춰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, 그 외에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